

환아(患兒; ‘아픈 아동,’ 즉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를 총칭)

를 위한 권리와 교육 보장의 필요성

1. 모든 환아는 병원이나 가정에서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해당 권리는 국적국 밖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2. 환아들을 위한 교육권은 모든 아동이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
3. 병원 내 학교에서는 환아들을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상화된 일상을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병원 내 교육은 학급, 그룹, 개인 단위로, 혹은 병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4. (환아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과 가정에서의 교육은 홈스쿨링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환아의 필요와 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학습 환경이나 시설/인프라는 반드시 환아의 필요에 최적화 되어야 하고, 고립을 막기 위해 필요한 통신기술이 충분히 사용되어야 한다.
6. 환아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법과 자원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는 기본적인 교육 커리큘럼 외에도 투병이나 입원으로 인한 특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병원이나 가정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들은 필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8. 환아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다방면적 접근을 취하는 종합 관리 팀(multi-disciplinary caring team)의 구성원이자, 입원중인 환아와 홈스쿨링 사이의 중요한 연결점이다.
9.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권과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반드시 안내받아야 하고, (해당 과정에 있어) 능동적이고 책임감을 지니는 참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10. 의료기록이나 개별 진단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환아의 온전함/무결성(integrity)이 보장되어야 한다.

HOPE 헌장

2000년 5월 20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HOPE 총회를 통해 채택됨

2016년 5월 13일 비엔나에서 HOPE 총회를 통해 개정됨

(Korean version of the Charter of HOPE)



www.hospitalteachers.eu